DR & AJU 공공전략그룹
Public Sector Relations Group

2025. 8 Vol. 67

P&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정무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2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3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5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6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8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9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1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35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6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38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40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50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1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54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58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Ⅴ. 본회의

64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65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7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70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74 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정무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정무위원회

위원정수 24 | 현원 24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8 |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윤 한 홍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남근
서울 성북구을
초선(제22대)

위원
김승원
경기 수원시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용만
경기 하남시을
초선(제22대)

위원
김현정
경기 평택시병
초선(제22대)

위원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박상혁
경기 김포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유동수
인천 계양구갑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이강일
충북 청주시상당구
초선(제22대))

위원
이인영
서울 구로구갑
5선(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이정문
충남 천안시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허영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재선(제21대, 제22대)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상훈
대구 서구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유영하
대구 달서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이양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추경호
대구 달성군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조국혁신당

위원
신장식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사회민주당

위원
한창민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소관기관

소관부처현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부처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국무총리실 (8개)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공동소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
	6	청년기본법
	7	행정규제기본법
	8	행정조사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13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	제조물책임법
	11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47)	1	공인회계사법
	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2	금융지주회사법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금융위원회(47)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9	담보부사채신탁법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	보험업법
	23	상호저축은행법
	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신용협동조합법
	28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예금자보호법
	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9	전자금융거래법
	40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2	중소기업은행법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6)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신고자보호법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	행정심판법
국가보훈처(17)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국가보훈처(17)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9	독립기념관법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1	보훈기금법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1	개인정보 보호법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1)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6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7	윤석열 정부 12 · 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9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0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집단소송법안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디지털자산기본법안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상품권법안
		2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1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5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 ·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9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7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아동건강기본법안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근로감독관법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여성가족위원회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09호

최 은 석

선 거 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7.2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경영권 관련 제도에 따르면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경영권 경쟁수단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어 옴.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어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출과 관련한 3%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개정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등 경영권 관련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에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 및 배임죄 적용 대상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은 결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17조 등).

2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31호

김 현 정

선 거 구	경기 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7.2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3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702호

이 강 일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7.2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4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962호

선 거 구	경기 이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4. 제안

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삭제)

5

정무위원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784호

안 도 걸

선 거 구	광주 동구남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7.28.	제안

제안이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빌)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및 인가의 취소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상품설명서 작성 · 공시의무,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의무 및 이자 지급 금지 의무, 상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보험가입,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그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 조사권한,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처분 및 그 외 건전경영, 운영실패 시 처리 등 관련 조치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

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긴급조치명령 요청,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 원장에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6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60호

김 미 애

선 거 구	부산 해운대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04호

전 용 기

선 거 구	경기 화성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6. 제안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43호

정 연 욱

선 거 구	부산 수영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24호

김 원 이

선 거 구	전남 목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6.	제안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안 제28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23조, 제35조 및 제37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 명령 및 주식 등의 양도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등록하지 않거나, 제4조4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 ·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958호

어 기 구

선 거 구	충남 당진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 상 휘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4.	제안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 ·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 ·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 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 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녹색철강특구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 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 · 신뢰성평가 ·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 · 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 ·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 행정적 ·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

파.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공급망 설치 ·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 · 가공 등 기반시설 구축,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및 제44조).

거.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5조).

너.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6조).

더.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

머.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 · 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버.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 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8조).

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9조).

11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839호

정 청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4선(제17대, 제19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7.3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 · 신체 ·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12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53호

황 명 선

선 거 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0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 ·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3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공소청법안
		5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무위원회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10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1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71호

선 거 구	서울 도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6.12.	제안
상임위원회	2024.0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4.12.03.	상정
	2025.07.22.	상정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

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참고자료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함 (①)	다소 필요함 (②)	다소 필요없음 (③)	전혀 필요없음 (④)	필요함 (①+②)	필요없음 (③+④)
온라인쇼핑몰	(603)	25.4	39.6	29.7	5.3	65.0	35.0
배달앱	(300)	30.7	30.7	35.7	3.0	61.3	38.7
숙박앱	(200)	42.0	32.0	23.0	3.0	74.0	26.0

* 출처 :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체 수 및 매출액]

구분	전체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475개	127개	104개	244개
매출액*	114.4조원	87조원	17.8조원	9.6조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2,408억원	6,850억원	1,712억원	393억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 광고 · 중개 · 입점 수수료 매출액 합산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인 기업
※ '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인심사 제2소위원회>

■ 이정문 위원

저희가 오늘 심의 예정인 법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를 하려고 했던
법들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통상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현재 이 법들을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있으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의는 한미 통상 협상이 끝난 이후로 미뤄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민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신장식 위원

논의도 했고 공청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또 우리가, 물론 통상 현안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는 있으나 지레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미룰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가 논의한 수준만큼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나 공청회까지 했는데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 갈 수 있는 다른 대안 없이 그냥 무작정 뒤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끌어온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허탈, 허망하거든요. 이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지금 워낙 안도 방대해서 그 안에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한미 통상 상황을 좀 본 후에, 온라인 플랫폼을 또 지금 나누자

는 의견도 있고 다른 단일화 법안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의 자체를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다시 한번 의견드립니다.

■ 신장식 위원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뒤로 미룬다가 아니라 논의를 오늘도 계속한다라는 정도로 회의록에 남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 협상을 하는 쪽 입장에서도 하나의,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 나름의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논의를 오늘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 협상을 고려하여 통상 협상 이후로 논의를 넘긴다라고 회의록에 남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를 지속한다라는 정도로 남기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 유영하 위원

지금 신장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를 통상 협의에 대한 지렛대로 삼는 그런 여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 이 논의를 조금 뒤로 미루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법안이고 또 여기 관련된 법안들이 내용별로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왔으면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당에서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좀 절충을 해서 공약수를 뽑아서 오는 게 다음 심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심의를 하면요 계속 얘기가 쳇바퀴 돌 듯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앞으로 좀 더 숙고해서 심의한다는 정도로 속기록에 남기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근로복지공단법안
		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2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3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4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09호

고 동 진

선 거 구	서울 강남구병
정 당	국민의힘
당선 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7.02.	제안
상임위원회	2025.07.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26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배임에 관한 죄의 판단에 적용하려는 내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미 판례상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긍정적 측면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로 한정하는 사항은 이사 등의 자유로운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특별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87호

선 거 구	서울 강남구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7.04.	제안
상임위원회	2025.07.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적용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 단서 신설).

참고자료

[경영판단의 원칙 관련 해외 사례[1]]

(1) 미국

미국 판례법상 주로 대표소송(derivative suit)에서 쟁점이 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경영에 관하여 내린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직한 믿음에 기하여 성의(誠意)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송법상 추정(presumption)을 뜻함. 즉 이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측에서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됨.

(2) 독일

독일에서는 2005년 주식법(Aktiengesetz) 개정을 통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였음. 주식법 제93조 제1항의 "이사는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정상적인 경영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의 결정(경영판단을 의미)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실체법상의 원리로 다룬 것이라고 평가됨.
미국에서는 추정적 효과로 이사의 행위가 적정하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나, 독일의 경우 주식법 제9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이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됨.

1 노태악, 전게서, pp.235-236 ; 송일두, "이사의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8권 제3호(2023), pp.122-129

독일 형사 판례에서도 경영판단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는데, 2016년 HSH Nordbank 사건에서 주식법상 이사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배임죄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93조 제1항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법상 이사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되어 배임죄의 위무 위반도 부정된다고 본 바 있음.

(3) 영국
일반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의 기원은 1742년 영국의 Charitable Corp. v. Sutton 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언급됨. 영국에서도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는 접근방식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나,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 호주 등과 같이 이를 공식적 규칙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되며, 판결문에서도 경영판단(business judgement)이라는 표현이 일관되게 사용되지는 않고, "상업적 판단(commercial judgment)"이나 상업적 결정"(commercial decision)", "경영상 문제(business matter)"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4) 일본
경영판단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사의 회사법상 임무위배 여부, 이사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등의 판단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25항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사 등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법 개정을 통해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처벌을 완화할 경우 그에 따라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 조항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26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배임에 관한 죄의 판단에 적용하려는 내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미 판례상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긍정적 측면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로 한정하는 사항은 이사 등의 자유로운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사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특별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략)

■ 장동혁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가 이렇게 돼서 확인 좀 하려고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을 배제할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줬는데 민법에서 적용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민법에만 그동안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위법성의 경우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의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해 왔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꼭 그런 법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형법상의 위법성 개념과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을 볼 때는 오히려 형법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법성의 개념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민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보다 훨씬 더 위법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형법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고의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더 넓은 위법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민법에서도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법상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아니고 형법에도 이미 적용돼 왔었을 뿐더러 민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에서도 당연히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종전에는 회사였다가 전체 주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 장동혁 위원

예.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걸 전제로 해서 배임죄의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이런 법제하에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종전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 영역이나 민사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 영역하고 형사책임 영역하고의 관계, 전체적인 체계 정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두 부분충돌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사적인 영역과 형사적인 영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장동혁 위원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연히 계약상 원칙에 의해서 책임이 인정됐지만 판례에 의해서 주주에 대해서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활동해야 된다라고해서 주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례는 책임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물론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책임이 발생했지만. 따라서 그동안 판례에서도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인정했었던 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달리 해석해서, 저는 이것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배임에 관한 죄의 판단에 적용하려는 내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미 판례상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긍정적 측면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위배로 한정하는 사항은 이사 등의 자유로운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특별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426호

강 민 국

선 거 구 경남 진주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 준 현

선 거 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7.	제안
상임위원회	2025.04.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5.07.21.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5.07.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1 신설).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 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시 한국산업은행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아.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 · 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하고,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 · 의무는 국가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자료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

▣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동 자금을 기초로하여 산은 본체·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가능

❶ (대상)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❷ (재원) 정부 보증 기금채 +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

❸ (지원방식) 저리대출 外에도 지분투자·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

❹ (지원체계) 주요정책 사항은 산경장에서 논의, 개별 자금지원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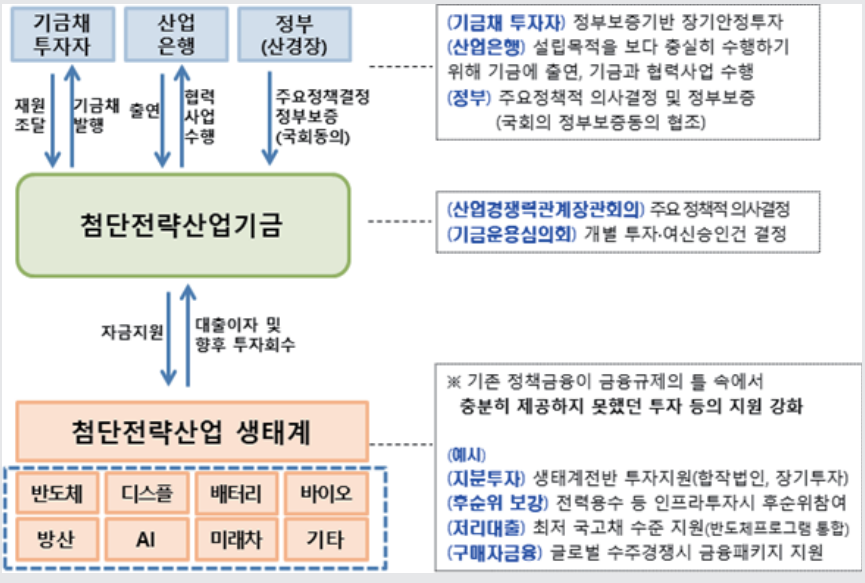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2025. 3. 5.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지원 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등]

구분	지원 대상
첨단전략산업 기업	•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 바이오(2) 분야 총 17개 기술
	•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23), 이차전지(10), 백신(7), 디스플레이(8), 수소(10), 미래형이동수단(5), 바이오의약품(8) 분야 총 71개 기술
	• (제3항) 미래전략과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첨단전략산업 관련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 구매기업, 관련 인프라 및 기술기업 등

[유사 기금과의 재원 비교]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안정화법)	금융안정기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정부보증 기금채 (첨단전략산업 기금채권)	• 정부보증 기금채 (기간산업안정 기금채권)	•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 기금채권)	• 정부보증 기금채 (금융안정 기금채권)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운용수익
• 한국산업은행 출연금 • 산은외 금융회사 출연금	-	-	• 금융기관 출연금
• 정부 이외 출연금 및 기부금			• 기업 등 출연금 • 산업은행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 및 방식(안 제29조의9제2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1호	첨단전략산업기업	-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기타 신용공여, 사채인수, 출자 -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기타 신용공여, 사채인수, 출자 방법에 따른 지원
2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SPC, PEF 등)	- 출자, 투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기타 신용공여, 사채인수
3호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 구매 자금 대출

4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중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투자 등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기타 신용공여, 사채인수, 출자
5호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호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호	기금 운용비용	

[유사 기금과 조성 · 운용 기간 비교]

기금명	조성 또는 운용 기간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조성일로부터 20년간 운용. 5년간 자금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2025.12.31.까지(약 5년) 운용
공급망안정화기금	법 시행일(2024.6.27.)부터 5년간 조성
금융안정기금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및 기금채 발행 조항은 2014.12.31.까지 유효(조성)

주: 타 기금의 경우 조성기간 및 운용기간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 신장식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030호

이 용 우

선 거 구	인천 서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신 장 식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조국혁신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정 혜 경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진보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6.23.	제안
소위원회	2025.07.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5.07.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 (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라. 노동쟁의를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마.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바.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아.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자.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차.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카.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타.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파.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하.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 소위원장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동 위원

오늘 노조법 2·3조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소위 전체내용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은 철회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정하는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소위를 저희가 퇴정하고 나서 여러 소문이 있었지요. 저녁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당당하게 전체회의를 잡아놨다고 오전부터 말씀을 주셔야지 전부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의회·국회를 무시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법률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 가지고, 청부입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누구의 청부입법인지는 잘 알 겁니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수해가 난 그 장소가 대부분 지금 미국 소가 들어온다, 미국 쌀이 들어온다, 미국 사과가들어온다, 미국 옥수수·감자가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왜 이게 중요한 법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개정안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민주당식 방식 곧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개정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됐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내용, 왜 우리 법률은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말도 안 하는 것을 반영했느냐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해야 되는 것이

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사방 둑 터지듯이 계속 제안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김영삼 정부의 짧은 시일 내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받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말입니다. 3년·5년씩 미뤄 가면서 노사가 합의를 해 올 때까지 정치권은 끝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역사로부터 온 그런 교훈일 겁니다.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 온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후과는 아마 정부와 우리 여야가 공히 같이 져야 될 것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 협정이 있습니다. 관세 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결국 노조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뻔히 보면서, 알면서 청부입법 내지 의회 무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다시 한번—우리의 전통이지 않습니까—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이어 나가는, 제정하는 그런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략)

■ **이용우 위원**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소위 과정에서 지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테이블에 모든 논리라든지 논거라든지 주장들을 다 올려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제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90% 이상 저는 합의점을 찾았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항 하나하나 뜯어 가면서 여야가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 보자 했는데 갑자기 2조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고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퇴장을 해 놓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렇게 퇴장까지 해 놓고 정작 논의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무슨 청부입법이다. 도대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시면 민주노총방탄법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길 때가 된 것 아니냐, 언제까지 20여 년 동안 이걸 방
치할 거냐라고 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3조와 관련해서는 재계도 동의할 수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이 재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조항인데 그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손배 폭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된 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현장의 노사관계라든지 노동현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악선적이고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께서도 3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건 2조인데요. 2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로자 정의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고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통과된 노동쟁의 정의보다는 축소된 범위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용자 정의는 어떻습니까? 2조의 사용자 정의는 이미 제가 만나 본 재계단체라든지 재벌그룹의 대표자 분들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접점을 찾아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처리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3조와 같이 2조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다. 노동계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박찬 것은 국민의힘이 퇴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지점을 분
명하게 밝히고 싶고요. 저는 오늘 정리된 내용이 노동계나 재계 양측에 다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21대, 22대 두 차례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렇게 무산이 됐으면 언제까지 늦출 겁니까? 이

제 충분히 숙성된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법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노동 행정과 노사관계에 우려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다시 한번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재계도 만나고 노동계도 만나고 오늘 통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동계, 재계 양해도 구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1940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08.04.	원안가결
	2025.08.13.	정부이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2건)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20319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참고자료

[건설공제조합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

구분	자본금	총 보증한도	보증잔액	추가 보증가능액
금액	6조 5,600억원	196조 8,000억원	167조 1,000억원	29조 7,000억원
	비율			비고
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225.3%			100%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
당좌자산 유동성 비율	1,788%			

※ 자료: 국토교통부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8.01 / 2025.08.04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33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33인(찬성 231인, 반대 0인, 기권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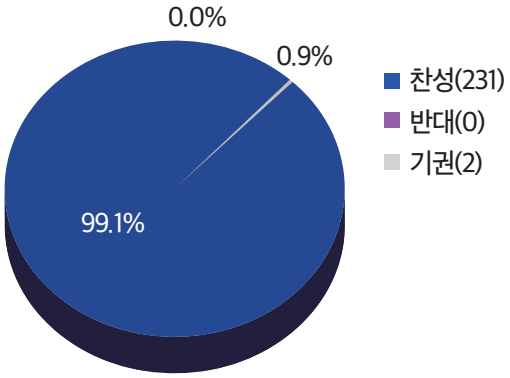

찬성 (23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의원

기권 (2인)

곽상언 최은석 의원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1942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08.04.	원안가결
	2025.08.13.	정부이송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 ·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 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공항시설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5, 제31조의7 및 제31조의10 신설).

마.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6).

바.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아.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15건)

-[22100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20987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2097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2208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220789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220799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20827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22082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2085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22072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22072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22071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20716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2074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22113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8.01 / 2025.08.04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36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36인(찬성 236인, 반대 0인, 기권 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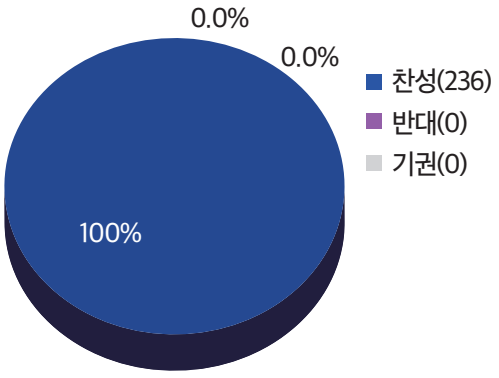

찬성 (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의원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1644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07.23.	원안가결
	2025.08.01.	정부이송
	2025.08.14.	공포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5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7조)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8조)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9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10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 · 학과 통 · 폐

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사. 구조개선 명령(안 제12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3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카.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21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등(안 제25조 및 제26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4건)

-[220556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22048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손솔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해산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그간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해산정리금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교 시 학내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 12조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폐교, 정원 정지, 해산 등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대학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7.22 / 2025.07.23
■ **발의자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33인 / 재적 297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33인(찬성 189인, 반대 12인, 기권 3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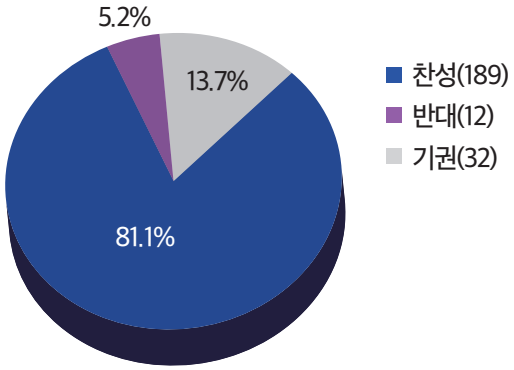

찬성 (189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준혁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손명수 송기헌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엄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재수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의원

반대 (12인)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손 솔 신장식 윤종오 임이자 전종덕 정혜경 주호영
차규근 한창민 의원

기권 (32인)

강경숙 강득구 고동진 곽상언 김동아 김선민 김태선 김형동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정현 박홍배 백승아 서미화 서왕진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어기구
염태영 유상범 이기헌 이만희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춘생 최보윤
한기호 황운하 의원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1647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08.04.	원안가결
	2025.08.06.	정부이송
	2025.08.14.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22056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2211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주요발언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서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퇴행적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과서의 질을 공고히 하는 같은 법안을 냈기에 오늘 대안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매우 익숙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웠고 저도 배웠던 형태의 똑같은 종이 교과서입니다. 오늘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시키면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 공부했던 이 종이 교과서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과서는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저 글자만 가득한 고요한 물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말하고 듣고 교정하며 채점까지 합니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고 성취도를 끌어올립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려 왔던 교육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태의 종이 교과서로 공부하며 영포자·수포자가 넘쳐나는 잠

자는 교실, 부모님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시대를 지속시키겠습니까? AI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면, 첫째, 교과서이기에 제공되던 확실한 무상교육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용 주체에 대한, 부담에 대한 갈등으로 아예 교육자료로 채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검정 절차가 없어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정부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우며 저작권 문제도 발생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박탈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 꼭 이 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 산간벽지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다국어 인터스페이스(interspace)로 수업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이들에게 음성 지원이 되는 교과서, 자막과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가 제공되는 교과서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육격차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개발에 참여했던 수많은 개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조 8000억 원의 국가 예산과 8000억의 민간투자 사업이 투입된 사업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록 낙마했지만 이 정부가 지명했던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교육의 세습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후보자는 두 따님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총리후보자는 배추 투자로 수억 원대 미국 유학을 보내고 국제고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의 현장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교육의 세습을 할 테니 너희는 같은 교실에서 혁신 따위는 집어치우고 소리 없는 교과서로 묵묵히 공부하며 노력만 하라고 여러분은 외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교실을 방치하겠습니까? 대통령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소년공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교육의 힘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입니다. 우리 공교육을 혁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교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교과서를 백 년 동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백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모든 변화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혁신에 동의하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끌어 갈 교육의 혁신이 달려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민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제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문제풀이 도구에 불과한 AIDT를 멈춰세우는 법안으로 향후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미 AIDT가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서지영 의원께서 많은 말씀 주셨지만 잠자는 교육을 일깨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나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아이들을 문제풀이 학생으로만 만들겁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갈데없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이 사교육시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입시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이 현장에 그대로 놓기만 할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AIDT 정책은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공교육을 아예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모했던 교육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AIDT에 AI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다. AIDT에는 당시에도 AI 기능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저 맞춤형 문제가 끝없이 출제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수백 번 외쳤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실증을 동반한 검증 없이 부작용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AIDT의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AIDT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 연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AIDT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물 교과서가 없는 상태였으니 말하나 마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사의 절대다수는 AIDT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AIDT가 학력 격차를 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AIDT가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불가능한 일입니다. 꼴찌 학생이 열 문제 푸는 동안 1등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미지옥으로 학생들을 국가가 밀어 넣는 형국입니다. 다섯째,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꽤나 많은 학교들이 AIDT를 썼습니다. 그러나 잘 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AIDT 준비 미흡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래서 1학기부터 17개 시도에

자율 채택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채택하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서울 24.3%, 인천 18.8%, 충남 15.4%, 경남 9.9%, 채택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이 가운데 직접 써 본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채택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학교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분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AIDT가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입니다. 문제풀이를 더 빠른 시간에 많이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워 주는 교육입니다. AI에 익숙한 인재가 아니라 AI와 협업할 줄 아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어떤 교수법이 필요한지, AI를 교육의 어떤 부분에 접목시켜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AI 교육에 대한 R&D 투자도 절실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주호 장관이 이미 출판사와 정부 간 소송을 한번 유발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 자율화 정책, MB 정부 때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2327억의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이번에도 또다시 출판사와 교육부, 정부 간의 소송을 알면서도 유발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도 속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무능 했던 것입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AIDT가 교육현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교육정책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재단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바라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도 아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행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재의 교과용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여당의 반미래적 행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AIDT는 교과용도 서로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고 많은 교육청에서 이의 지원을 위해서 계약 체결과 예산편성까지 마쳤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AIDT는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희한한 일이 우리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육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 법률이 불러올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정책 일관성의 상실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의 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AIDT는 국가가 미래교육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교육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AI 기반 차세대 교과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AIDT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시범학교 지정, 교사연수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으며 민간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해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법적 지위 변경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를 믿고 기꺼이 공교육에 투자한 교육 협력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분야의 공공·민간 협력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아 정부정책 전반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고질적인 잦은 정책의 변경과 일관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AIDT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특히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교육격차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무상제공의 원칙이 무너지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며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본질은 콘텐츠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 문제입니다. AIDT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 반응은 주로 콘텐츠 자체보다는 도입 과정의 절차적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348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AIDT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 준비 부족, 연수 미비,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전 시스템 구축과 행정적 지원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중학교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사용교사 중 약 55%는 AIDT가 수업 몰입도 향상, 맞춤형 학습, 수업 준비 효율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도입 초기의 문제점이 콘텐츠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실행 방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렇듯 AIDT는 단순한 교육자

료가 아니라 AI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수준의 공공교과서이자 디지털교육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AIDT의 교육용도서로서의 지위는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미증유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 우리 아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8.04 / 2025.08.04
■ **발의자 / 제안자** : 문정복의원 외 32인(본회의 수정안)
■ **표결 의원** : 재석 250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50인(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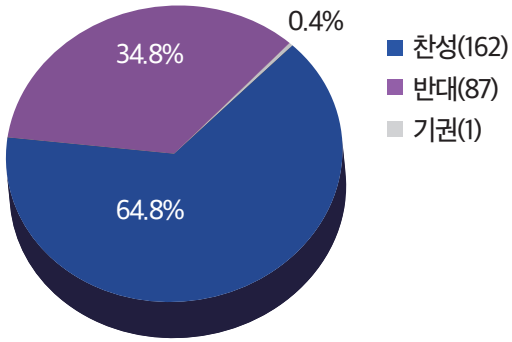

찬성 (162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 희 의원

반대 (87인)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의원

기권 (1인)

안상훈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8월호는 2025.7.15.부터 2025.8.14.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7월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	29일	30일	31일	8월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본회의							● 제427회 제2차								● 제427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		●	●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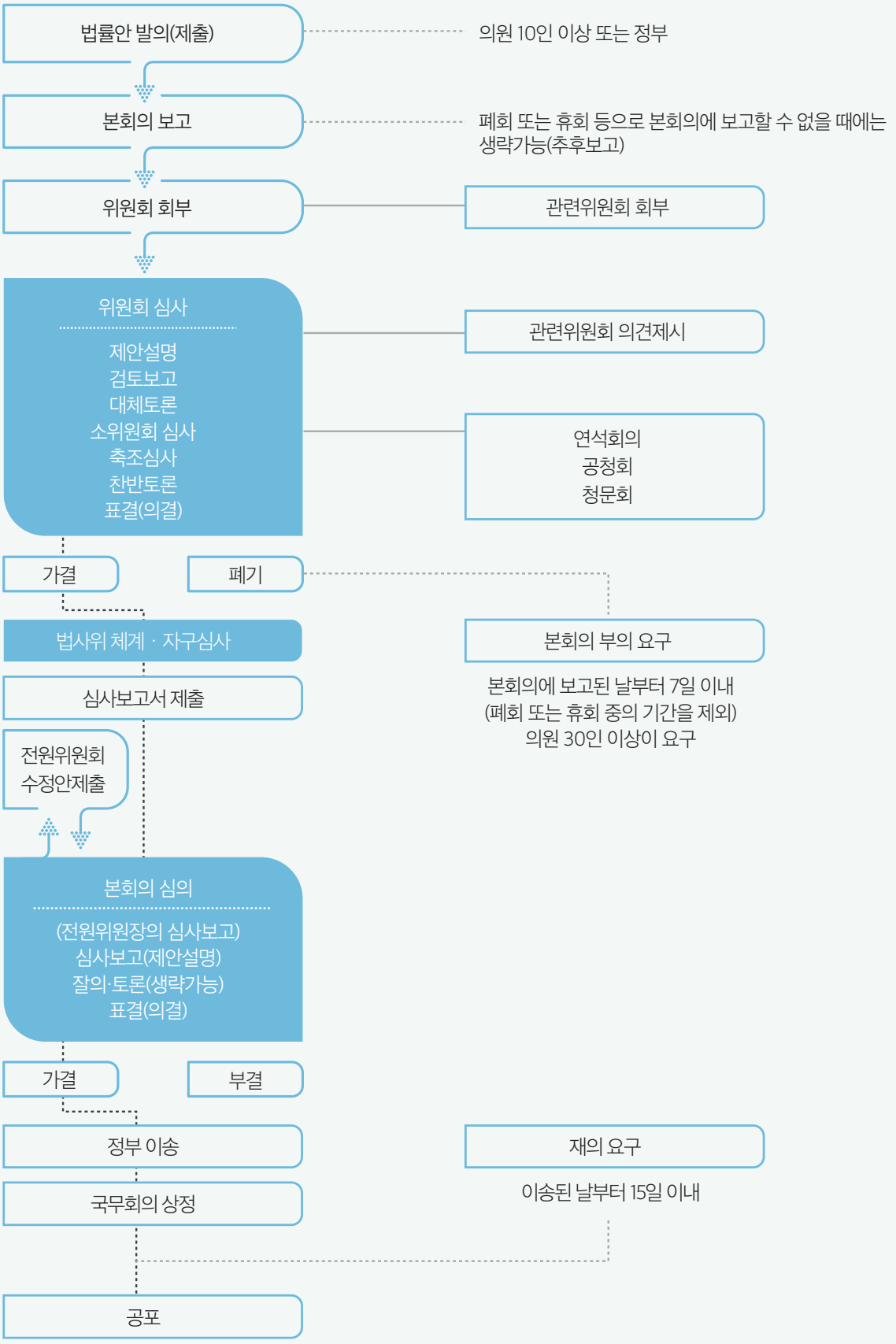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